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단7039(본소), 2018가단2010(반소) 판결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

피고(반소원고) B

변론 종결 2018. 12. 19.

판결 선고 2019. 1.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북 예천군 C 전 22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9, 19, 18, 17, 16, 15, 14, 13,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 화단 및 잡목, 같은 도면표시 19, 20, 21, 16,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디 부분 8㎡ 잔디 및 잡목, 같은 도면 표시 3, 4, 25, 26, 12, 11, 13, 14, 15, 16, 21, 2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9㎡ 블럭벽돌바닥, 같은 도면 표시 13, 22, 23, 1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 문주,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 아치형 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9, 10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위치한 울타리를 각 철거하고,

나. 같은 도면 표시 9, 19, 20, 3, 4, 25, 26,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경북 예천군 C 전 229㎡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에 대하여 2001. 3.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9. 8.경 D로부터 경북 예천군 C 전 2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8.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접한 경북 예천군 E 대 516㎡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소유의 화단과 잡목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감정도 표시 9, 19, 18, 17, 16, 15, 14, 13,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에, 잔디 및 잡목이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16,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디 부분 8㎡에, 블록벽돌바닥이 같은 도면 표시 3, 4, 25, 26, 12, 11, 13, 14, 15, 16, 21, 2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9㎡에, 문주가 같은 도면 표시 13, 22, 23, 11,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에, 아치형 구조물이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에, 울타리가 같은 도면 표시 9, 10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각 위치하고 있고(이하 위 구조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구조물'이라 한다), 피고는 위 화단, 잔디마당, 블록벽돌바닥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9, 19, 20, 3, 4, 25, 26, 12, 11,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구조물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침범한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F과 원고가 1981. 3. 3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순차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1. 3. 3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반소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아버지인 F과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1981. 3. 31.부터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는 1999. 11. 5.경 주택 신축 과정에서 토지 침범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F 내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하여 2001. 3. 31.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2008. 9.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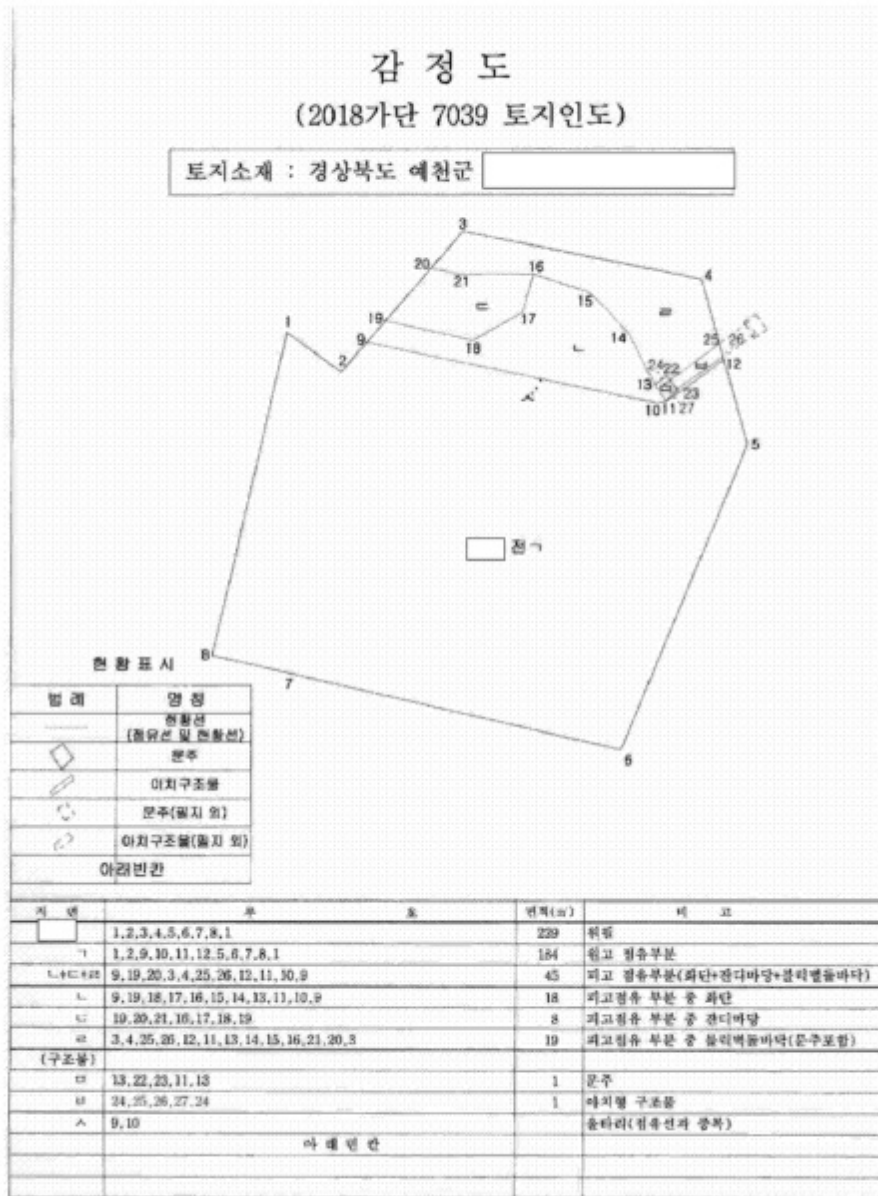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별지1



별지2

예천군

